

| | | | |
|---|--|--|---|
|  인천광역시 | 보도자료 | |  |
| | 배포일자 | 2022년 7월 11일(월) 총 6매 | |
| 담당 부서 교통정책과 | 담당자 | • 교통안전팀장 김영신 ☎440-3861 • 담당자 차영주 ☎440-3862 권윤경 ☎440-3866 | |
| 사진(이미지)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인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제1도시로 도약

- 전년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50%·사망자 100% 감소 성과 -
- 스쿨존 안전확보 철저한 보행자 중심 원칙 ... 12일 시행 앞둔 개정 도로교통법과 일맥 -
-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횡단보도 투광기·무인교통단속장비 등 3중 보호막으로 안전 확보 총력 -

인천시가 스쿨존 안전 확보사업 추진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제1도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추진한 스쿨존 안전 확보사업을 통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50%, 사망자 100% 감소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인천경찰청 잠정통계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28건에서 14건으로, 사망자는 1명에서 0명으로 줄었으며, 부상자도 전년 27명에서 14명으로 감소했다.

시는 어린이의 보행 특성과 안전 위험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횡단보도 조명 강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693개소(2022년 6월 기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운영 중이며, 연내 통학로 일원 415개소에 맞춤형 교통 안전물을, 121개소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133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개선 대상지로 선정하고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의 스쿨존 안전 확보 사업은 철저하게 ‘보행자’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붙임2)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시는 그간 보행자 중에서도 교통약자,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신호등의 색깔과 관계없이,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보호자까지 보호하려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법안처럼,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안전속도 준수율을 높이며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까지 2중, 3중 보호막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3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6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추

가 지정하면서 보호막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써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46%에 해당하는 322개소에는 화물차 접근이 불가능해졌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제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는 7월부터 ‘옳은 멈춤, 우회전 일시 멈춤’ 캠페인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공항 및 항만시설이 밀집돼 교통량이 많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우회전 일시 멈춤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교통안전도시로서 인천을 브랜딩 한다는 목표다.

<붙임 1> 스쿨존 안전 확보 사업 관련 이미지

<붙임 2>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1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횡단보도 투광기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무인단속카메라

붙임 2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22. 7.12. 시행)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교차로 통행방법 우회전 기준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시, 신호위반 색인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 → ①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함 ('22. 7.12.시행)

4.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용
· 범칙금: 5회, 7만원 / 5회, 6만원
· 벌 점: 10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종과실 12개월)
교통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무단횡단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하며 운행하여야 합니다